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'16년 4/4분기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교부 통보

1. 자활지원과-13318(2016. 10. 20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(지역자활센터 등)에 의거, 2016년 4/4분기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을 붙임과 같이 교부하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사업명 :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

나. 기준보조율 : 국비50%, 시비25%, 구비25%

- 종사자복지수당은 시비 100% 별도

다. 금회교부액 : 금1,109,913,000원(금일십일억구백일만삼천원)

라. 교부 대상 : 25개구 31개 지역자활센터(별첨 교부내역 참고)

마. 교부 방법 : 관할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로 입금조치

바. 예산 과목 : (분야부문)사회복지 (정책사업명)저소득시민자활지원

(단위사업명)저소득시민 자활사업운영지원

(세부사업명)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(편성목)자치단체등이전

(통계목)자치단체경상보조금(100-308-01)

사. 교부 조건

- 이 보조금은 타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,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환수토록 함.

-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고 집행 완료와 동시에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함.

- 이 보조금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계좌로 입금하여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함.

- 이 보조금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」, 「자활사업안내(보건복지부 지침)」 등 관계 법령·조례 및 지침에 의거하여, 적법·적정하게 집행해야 함.

- 자치구는 소관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 관련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.

※ 지역자활센터 운영비, 사례관리비, 종사자복지수당은 12월 추가경정 예산 확정시 미교부 예산 일괄 교부

붙임 2016년 4/4분기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교부 내역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

수신자 서구1-25(지역자활센터지원 담당 부서장)

주무관 **박근봉** 자활사업팀장 **정순중** 자활지원과장 10/20 **김종석**

협조자

시행 자활지원과-13334 (2016.10.20.) 접수 사회복지과-26896 (2016.10.20.)
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(태평로1가) /
전화 02-2133-7497 /전송 02-2133-0723 / bluepark21@seoul.go.kr / 대시민공개